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진욱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9165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0.

발 의 자 : 정진욱 · 황정아 · 양부남
이개호 · 서삼석 · 안도걸
이훈기 · 조인철 · 정준호
장철민 · 채현일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등 구체적인 공급조건을 약관으로 정하여 인가받도록 하고 있으며,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에 비례하는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고 있음.

그러나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, 특히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소재한 철강 및 석유화학 기업들의 경우,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정으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.

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위기 관련 지정 지역 내에서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용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선택공급약관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해당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3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등).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전기판매사업자는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 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(이하 “산업위기지역”이라 한다)에 공급되는 다음 각 호의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.

1. 석유화학산업(「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2. 철강산업(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
제5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석유화학산업 또는 철강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담금에 관한 적용례) 제5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④ · ⑤ (생 략)

제51조(부담금) ① (생 략)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~ 3. (생 략)

<신 설>

③ ~ ⑦ (생 략)

공급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.

1. 석유화학산업(「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
2. 철강산업(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51조(부담금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석유화학산업 또는 철강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